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0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2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나2036424 배당이의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주식회사 B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C

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. 6. 18. 선고 2014가합6616 판결

변 론 종 결 2016. 1. 14.

판 결 선 고 2016. 2. 25.

주 문

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[1)]

1) 1심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A의 피고 및 1심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에서 예비적 청구로 되어 있으나, 그 각 청구의 내용, 원·피고와 A 및 1심의 다른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양자는 주관적·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1심판결에 대하여는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05

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. 8. 12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2번의 배당액 2억 6,000만 원을 1억 3,000만 원으로,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 93,984,657원을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118,013,616원을 341,998,273원으로 각 경정한다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등기관계

1) 2007. 8. 17. [redacted] [redacted]군 G 전 6,20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) 2008. 7. 22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, 채무자 원고, 채권최고액을 2억 6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나. 경매절차 진행

1) 2010. 5. 14.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(의정부지방법원 E, 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.

A을 포함하여 아무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, 원고와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05

2) 2014. 9. 12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2014. 6. 27.자 매각을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3)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억 6,000만 원 및 이자 93,984,657원을 신고하였다.

다. 배당표 및 배당이의

1) 2014. 8. 12.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71,324,623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.

배당순위	채 권 자	명 목	배 당 액
1	[redacted]군	당해세	9,928,510원
	대한민국(역삼세무서)	당해세	3,817,780원
2	피 고	근저당권자	260,000,000원
3	[redacted]군	교부권자	70,703,160원
4	D	배당요구권자	273,083,219원
5	피 고	근저당권자	93,984,657원
6	원고(가평군 압류)	잉여금	32,869,970원
	원고(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압류)	잉여금	2,750,751원
	원고(대한민국 역삼세무서 압류)	잉여금	6,172,960원
	원 고	잉여금	118,013,616원

2)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. 8. 19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, 을가 제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1)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2008. 7. 15. 원고에게 대여한 1억 3,000만 원에 불과하고, 대여금의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억 3,000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다.

2)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2번의 배당액 2억 6,000만 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05

을 1억 3,000만 원으로,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 93,984,657원을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118,013,616원을 341,998,27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

1)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고 주장의 1억 3,000만 원 외에도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다른 대여금 채권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.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08. 7. 14. 피고에게 2억 6,000만 원의 약속어음(이하 '이 사건 약속어음'이라고 한다)을 작성·교부해 주었다.

2) 배당순위 5번 배당액의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금 2억 6,000만 원에 대하여 그 발행일(2008. 7. 14.)부터 배당기일(2014. 8. 12.)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배당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.

3. 판단

가. 배당순위 2번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

1)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08. 7. 15. 원고에게 1억 3,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.

2) 그러나 을가 제1, 4호증의 각 기재와 I의 당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1억 3,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외에 다른 대여금 채권 등도 포함하여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가)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08. 7. 14. 액면금 2억 6,000만 원, 발행일 2008. 7. 14.로 된 일람출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작성·교부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05

나)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I의 당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후에 걸쳐 원고 내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J(I의 형)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 1억 3,000만 원 외에도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나.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

이 부분은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7쪽 "2)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"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7쪽 11행 "인정할 증거가 없다" 다음에 "(피고는 2010. 3.경 원고의 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I는 원고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.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)"를 추가한다.

4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지용

판사 공도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4-05

판사 박선영